

꿈과 사랑이 있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계화중학교 학교생활규정(초안)
(23. 11. 27. 개정)



계화중학교

<https://school.jbedu.kr/gyehwa>

▣ 차 례

1. 제1장 총칙	3
2.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3
3. 제3장 학생 생활	4
4. 제4장 생활지도의 범위	7
5. 제5장 생활지도의 방식	8
6.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10
7. 제7장 규정의 개정	14
8. 부칙	14

<별첨자료>

1.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별표1)	15
1.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별표2)	16
1.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별표3)	17

계화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제정 2006. 3. 2
제6차 개정 2021. 3. 10
제7차 개정 2023. 11.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교육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교육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위해, 위험요인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생,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5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6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8조【안전에 관한 권리】

제9조【휴식을 취할 권리】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건전한 학교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제11조【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정보에 관한 권리】

제13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표현의 자유】

제15조【자치활동의 권리】학교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7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8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19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제20조【인성 및 대인관계】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비하, 조롱 등의 언행 금지)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 거짓된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저해되지 않게 행동한다

⑤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수업 태도】

① ~ ②항 동일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으며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⑥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22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④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제23조【용모】 ① 학생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위배되지 않는 용모

상태를 유지한다.

- ② 학생은 학교장이 정한 교복과 체육복을 입는다. 단, 계절에 따른 하계·동계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은 선택할 수 있다.
- ③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은 금지하며 피어싱은 귀에만 한정한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하며, 낙상의 위험이 있는 슬리퍼와 같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로 등하교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교실 컴퓨터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교내 게시물을 변경, 훼손해서는 안되며 각종 게시 관계는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책임을 다한다.

- 제25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 제26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② 칼(장난감 칼), 비비탄, 장난감 총, 쇠파이프, 고무총, 각목, 너클, 공구류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③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④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⑤ 레이저 포인터와 유사 관련 물품
 -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⑦ 전동 킷보드, 차량이나 오토바이
 - ⑧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 제27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6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혹은 흡입)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26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3. 위 목록과 관련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고 관련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9조【전자기기 사용】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⑥ 전자기기 소지 및 수거, 사용 방법 등은 학생자치회 또는 학급 회의를 통하여 별도의 자율규정을 둘 수 있다.

제30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②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을 하지 않으며,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31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한다.

제32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③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34조【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정의】

①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업, 특별활동, 수학여행 등의 활동, 그 외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2.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의 활동
3.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의 활동 포함

제35조【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1. 정당한 과제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2.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3. 수업 중 교사의 허락없이 잠을 자는 행위
 4. 해당수업과 관련없는 타교과 공부 혹은 개인과제를 하는 행위
 5.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적 행위
 6. 기타 수업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원활한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③ 기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6조【보건 및 안전】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식습관 및 급식 관련 일체)
-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 학교 내 통행예절, 학교 담을 넘거나 창문에서 위험한 장난을 하는 행위
 2. 위험한 장난감 및 흉기 소지

제37조【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1. 교사 및 학생 간 언어예절, 훈장말로 하는 욕설
 2. 교사의 교육적 지시에 대한 이행
 3. 학급규칙 준수
-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 ④ 기타 위 항과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제5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3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상담】 ①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

②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③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4.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요청한 상담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 할 수 있다.(전화상담도 포함)

제4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1. 수업시간에 교사의 허락없이 전자기기와 화장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 2. 봉사시간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3. 기타 규칙을 위반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1. 교장실, 2. 본교무실)로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1. 교장실, 2. 본교무실)로 분리

④ 학교의 장은 위 ③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4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방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4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교감

2. 위원: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관련 사안인 경우)

3. 간사: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4.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 교사, 학년 부장을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0조【징계 방법】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징계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인성·인권 생활지도 교사 등의 유기적 협조하에 실시하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 혹은 위탁하는 특별교육과정
2.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④ 출석정지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생활교육의 세부사항】 생활교육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장 학생생활> 항목 중 위배 사항이 있는 자
2.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3회 이상이며 무단 결석을 3일 이상(3-5일) 계속한 자, 학교행사에 이유없이 불참한 자
3. 타인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한 자
4.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5. 흡연, 흡연관련 물품 소지, 음주한 자
6. 기타 담임교사가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반입한 자
7.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②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3조 1항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한 자
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변조하거나, 학교명을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웹상에서의 활동 포함)
3. 안정제, 환각제, 대마초, 본드 등 마약류 복용자
4. 고의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자
5. <3장 학생생활> 항목 중 위배 사항이 있는 자
6.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③ 특별 교육 이수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3조 2항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한 자
2. 무단 결석을 6일 이상, 가정 통신 또는 방문으로 출석 독려를 받고도 3일 이상 계속 결석한 자
3. 사회봉사 징계 기간 중 개선의 정이 없는 자
4.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5. 3장 학생생활 항목을 위배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회의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내릴 수 있음
6. 특별교육이수 기관의 사정으로 특별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교내봉사 혹은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3조 3항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한 자
2. 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 개선의 의지가 없는 자
3.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⑤ 교권침해의 경우 교권보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53조【생활교육 적용】제53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54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55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징계 경감과 해제】

-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5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59조【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0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61조【연수와 교육】개정안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계화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5일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계화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방법 등 (제16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1.교장실 2.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1.교장실 2.교무실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함(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 계화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3]

징 계 기 준 표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계종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교권침해학생	○	○	○	○
	2	생활습관 및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공중도덕을 위반 한 학생	○	○	○	
	3	태도가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된 학생	○	○		
	4	불미스러운 글과 그림, 언행으로 남을 묘사하거나 비방한 학생	○	○	○	○
	5	남에게 욕설, 비난, 성적 발언 등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학생	○	○	○	○
준법	6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8	교사에게 불손하고 정당한 지시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9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0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훈계 지도를 받았으나 개선이 없는 학생	○	○	○	
	11	형법상 유죄를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저촉되어 학교 및 지역에 선도 위임된 학생	○	○	○	○
	12	도박을 한 학생	○	○	○	
	13	문신, 타투, 헤나를 한 학생	○	○	○	
	14	공공 문서를 위·변조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15	인장, 서명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약물	16	교내·외에서 절도를 하였거나 남의 소유물을 훼손한 학생	○	○	○	
	17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소지자 포함)	○	○	○	
수업	18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등을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19	수업태도가 불량하며 학습 분위기를 고의로 흐리게 하거나 수업 또는 남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20	시험 문제지를 절취하거나 누설한 학생	○	○	○	○
	21	단체 행동 및 수업 거부, 고사기피 선동자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생	○	○	○	○
통신	22	수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교내·외를 배외하는 학생				
	23	사이버를 통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	○	○	○	○
	24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학생	○	○	○	○
	25	불건전 서적(외설물) 및 통신매체 등을 소지한 학생	○	○	○	
	26	불법 사이트에 가입, 음란물 게시 및 홍보, 불법 아르바이트(성매매 알선 및 가담)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학생	○	○	○	○
	27	사이버 머니나 아이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에 가담하거나 남의 ID를 도용한 학생	○	○	○	○
안전	28	타인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각종 서버에 악의적인 해킹을 하여 큰 피해를 준 학생	○	○	○	○
	29	불장난, 방화행위를 하거나,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한 학생	○	○	○	○
기타	30	개인형 이동장치(차량,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학생	○	○	○	○
	31	학교 시설물, 공용물품 등을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	○	○	
	32	학습 기자재(컴퓨터 등)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	○		
	33	무단 외출이나 학교 담장 넘어 외출한 학생	○	○		
	34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으나 반성이 없는 학생은 가중 처벌을 한다.	○	○	○	○
	35	교복규정,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규정, 화장규정, 신발(실내화, 실외화)규정, 장신구규정, 두발규정 등을 위반한 학생	○	○	○	
	36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